

일반통상 별·후납우편물 반환제도 개선 안내

최근 대부분의 우편물이 고지서 등 인쇄물로서 발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우편물이 다수입니다. 이에, 고객의 변화된 수요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반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반통상 별·후납우편물의 반환제도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☞ (원칙) 일반통상 별·후납 우편물 반환 제외 (미반환)

※ 우표·증지라벨 첨부 등 소량 접수하는 우편물은 기존과 같이 반환

☞ (예외적 반환) 별·후납우편물 중 반환이 필요한 경우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**반환** 표시 시에는 예외적으로 반환

※ 반환이 필요한 별·후납 이용고객은 봉투에 '반환' 표시 필요

☞ (감액 폐지) 환부불필요(반송정보이용) 우편요금 감액 폐지

☞ (시행일자) 2024. 7. 24.자 접수분 부터

< 별·후납우편물 반환을 위한 표기방법(예시) >

보내는사람	새송우체국
세종시 도움5로 19	요금별납
우정사업본부 홍길동	
3 0 1 1 4	
반 환	
	받는사람
	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
	광화문 우체국장
	0 3 1 8 7

2024. 5.
시흥우체국장



반환제도가 개선됩니다

반환이 불필요한 우편물들
이대로 계속 반환해야만 할까요?

일반통상 별·후납 우편물 반환제도가 바뀝니다.

편지는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인에게 반환처리가 적절하였으나, 최근에는 반환이 필요 없는 우편물이 많아짐에 따라 변화된 고객의 수요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반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반통상 별·후납우편물의 반환제도를 바꿉니다.

현행

모든 우편물

- 원칙** 반환
- 예외** 우편물 표면에 **환부불필요** 기재 → 미반환

개선

별·후납 우편물

별·후납 외
(즉납, 우표첨부)

- 원칙** 미반환
- 예외** 우편물 표면에 **반환** 기재 → 반환
- 현행 동일

개선원칙

일반통상 별·후납 우편물은 반환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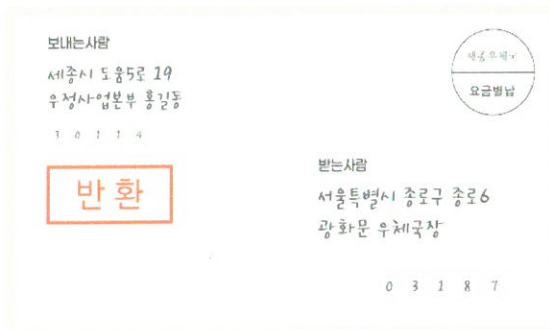
※ 우표·증지라벨 첨부 등 소량접수하는 우편물은 기존과 같이 반환

예외적 반환

별·후납 우편물 중 반환이 필요한 경우
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**반환** 표시
시에는 예외적으로 반환 ※ 우측 이미지 참고

시행일자

2024. 7. 24.자 접수분 부터



< 별·후납 우편물 반환을 위한 표기 방법(예시) >